집합투자기구 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
□ 대상투자신탁 :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사유 : 세법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재무정보 갱신

□ 변경내용

(1)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
①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및 손실 상계 방안 시행

② 공모펀드 국내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

③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귀속 채권원천징수 면제

④ 세법 용어의 변경(투자신탁의 이익→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)

(2)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

⇒ 2009년 12월 26일 기준으로 갱신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

⇒ 2010년 2월 2일 기준으로 갱신

(3) 제 5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4.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

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

⇒ 특수판매회사 삼성증권

□ 효력발생일 : 2010. 2. 8 (화)

□ 기　　타 : 자세한 내용은 변경 후 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